

현실 확인:

애플의 허위 디지털시장법 준수 계획

2024년 3월 7일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시행을 앞두고 애플은 DMA를 준수할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허위 준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진정한 법 준수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바로잡을 때입니다.

DMA의 조항: 개발자는 더 낮은 가격에 대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 **제5(4)조:** “게이트키퍼는 업무상 사용자가 무상으로 그 핵심플랫폼서비스 또는 그 밖의 채널을 통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다른 조건에 따르는 것을 포함하여 제안을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상 사용자가 이 목적을 위하여 게이트키퍼의 핵심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최종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애플의 실제 계획의 의미: 여전한 소통 금지

- 개발자는 여전히 소비자에게 더 우수하고 더 저렴한 제품에 대해 알릴 수 없으며, 소비자는 앱 외부에서만 이러한 사항들을 알 수 있습니다.
- 애플의 지침: “귀하는 앱스토어에 있는 귀하 애플리케이션 제품 페이지에 귀하 웹사이트 구매 관련 정보 또는 구매를 위한 귀하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EU의 앱에 대한 대체 약관 부록 3.3.C).

DMA의 조항: 개발자는 게이트키퍼 운영 체제에 “무료로”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한다

- **제6(7)조:** “게이트키퍼는 서비스 제공자 및 하드웨어 제공자가 무상으로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하드웨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3조(9)에 따른 지정결정에 기재된 운영체제 또는 가상비서를 통하여 접근하거나 제어하는 동일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능과 효과적인 상호운용을 위하여 해당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또한 게이트키퍼는 업무상 사용자 및 핵심플랫폼서비스와 함께 제공되거나 이를 지원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체 제공자가 무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게이트키퍼가 이용할 수 있거나 이용하는 것과 동일한 운영체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능과 효과적인 상호운용을 위하여 해당 운영체제 또는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능이 해당

운영체제의 일부인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애플의 실제 계획의 의미: 대체 마켓플레이스에 새로운 수수료 도입

-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 외부에서 다운로드되는 모든 앱에 대해 €0.5의 새로운 핵심 기술 수수료(Core Technology Fee, CTF)를 부과합니다. 애플이 iOS 액세스 외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데도 개발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며, 개발자가 애플 앱스토어 외에 앱을 배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이 조항은 애플이 자사가 보유한 플랫폼에서 경쟁하기로 결정했을 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애플은 자체 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브라우저, 앱스토어, 음악 스트리밍 등)에 대해 불공정한 비용 및 기술적 이점을 유지할 것입니다.

DMA의 조항: 앱 내에서 구매할 때 소비자와 개발자에게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

- **제5(7)조:** “게이트키퍼는 최종 사용자에게 게이트키퍼의 핵심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는 업무상 사용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맥락에서 해당 게이트키퍼의 신원확인서비스, 웹브라우저 엔진이나 결제서비스 또는 인앱구매 결제서비스와 같은 결제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는 기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업무상 사용자에게 이를 이용, 제안 또는 상호운용 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애플의 실제 계획의 의미: 개발자가 대체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

- 애플은 대체 결제 옵션을 제공하려는 모든 개발자에게 여러 단계별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대체 결제 옵션을 고려하는 개발자들에게 대체 결제 수단이 재정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니게 만들었습니다. 앱 다운로드당 €0,5의 수수료 외에도, 개발자는 타사 결제 옵션을 사용하는 모든 구매 건에 대해 최대 17%의 세금과 3~6%의 결제 처리 수수료를 애플에 지불해야 합니다.
- 애플은 위협적이고 과도한 경고를 통해 타사 결제 옵션을 사용하기가 어렵도록 만듭니다.

DMA의 조항: 소비자는 앱을 어디서 구매할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제6(4)조:** “게이트키퍼는 그 운영체제를 사용하거나 상호운용하는 제3자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또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의 설치 및 효과적인 이용을 허용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게이트키퍼의 관련 핵심플랫폼서비스 이외의 수단으로 해당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또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애플의 실제 계획의 의미: 과도한 수수료 부과 및 앱스토어 외부 배포에 대한 제한

- 애플은 지속적으로 소비자가 컴퓨터에서 하듯이 개발자의 웹사이트에서 직접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iOS 디바이스에서 어떤 앱 스토어를 허용할지에 대해 불공정한 제한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직접 다운로드할 수도 없고, 앱스토어도 거의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앱을 어디서 구할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 현재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앱 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앱 개발자(앱의 88%)가 대체 앱스토어를 이용하려면 새로운 약관에 서명하고 핵심 기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개발자들의 전환 의욕을 꺾는 요소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페이스북, 왓츠앱, 우버, 아마존 과 같이 인기 있는 앱들이 대체 마켓플레이스에서 사라지게 하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 애플이 개발자들에게 자사 앱 스토어와 다른 배포 방법 *중에서* 양자택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이러한 대체 배포 수단이 충분히 규모화되지 못하게 하려는 부당하고 반경쟁적인 시도입니다.

DMA의 조항: 게이트키퍼의 행위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이어야

한다

- **제6(12)조:** “게이트키퍼는 업무상 사용자와 관련하여 제3조(9)에 따른 지정결정에 열거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온라인 검색엔진 및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대한 업무상 사용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고 일반적인 접근 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애플의 실제 계획의 의미: DMA에 위배되는 새로운 선택적 약관 제공

- 애플은 동일한 앱스토어 서비스를 사용하는 앱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약관을 적용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최대 10~17%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이는 애플의 재량에 따라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앱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애플은 더 이상 앱 개발자에게 인앱 결제 솔루션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모든 앱이 **똑같은 앱스토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되어야(또는 부과되지 않아야) 합니다.